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04
------	-----

2019. 4. 2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3월 27일, 정진술 의원(찬성의원 13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3월 2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 4.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정진술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발굴·반영하는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15년 1월 1일에 경영기획관이 재정기획관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
- 나. 2019년 1월 1일에 경제진흥본부가 경제정책실로, 도시교통본부가 도시교통실로, 안전총괄본부가 안전총괄실로, 도시재생본부가 도시재생실로, 주택건축국은 주택건축본부로, 복지본부는 복지정책실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경제진흥본부 소관 조례 가운데 경제정책실 또는 노동민생정책관으로 이관된 사항을 고려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함(안 제3조~제38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행정기구조례”) 개정(2019.1.1)에 따라 기존의 행정기구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37개 조례에서 변경된 행정기구의 명칭 등을 각각의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서울시는 지난 1월 경제·복지·교통·안전·재생 분야 책임행정 구현과 핵심 프로젝트 실행력 강화를 위해 ‘1급 본부’를 ‘실’로, ‘주택건축국’을 ‘주택건축본부’로 재편하면서 6실 5본부 8국으로 정비한 바 있음.

〈본청 조직 개편 내역〉

(2019. 1. 1 일자)

구분	개편 전		현행	
	직급	1실 9본부 9국	직급	6실 5본부 8국
실	1급 (1)	기획조정실	1급 (6)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소방정감	소방재난본부	소방정감	소방재난본부
본부	1급 (5)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2·3급 (4)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한시기구)
	2·3급 (3)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지역발전본부(한시기구)		
국	2·3급 (9)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2·3급 (8)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 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 강화를 위해 일자리노동정책관내의 ‘일자리 정책담당관’을 ‘경제정책실’로 이관하고, ‘경제기획관’을 ‘경제일자리 기획관’으로 변경하였음.
- 창업 인프라 생태계 강화를 위해 ‘디지털창업과’를 ‘투자창업과’로 개편하고,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노동정책과 소상공인정책을 포함한 상생·공정·노동 등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노동민생 정책관’으로 개편하였음.
- 스마트도시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 정책관’으로, 지방정부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대외 협력담당관’을 ‘협력상생담당관’으로,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 발전담당관’으로 변경하였음.
- 이 밖에도 복지분야, 시민건강, 안전분야, 주거복지, 도시안전, 균형 발전분야의 조직 개편과 함께 현안업무 실행력 강화와 업무 통합을 위해 조직 재정비가 이뤄졌음.
- 제정안은 이와 같은 서울시 조직 개편사항을 일괄정비 함으로써 개정 시차 발생에 따른 입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 제정안의 사무분장 오류와 수정사항

- 제정안은 기구 명칭변경과 함께 행정기구조례에 미 포함된 ‘보좌기구’와 ‘과·담당관’ 등 하부조직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바, 일부 소속기관의 장과 담당관 등의 명칭을 잘못 변경한 조문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조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을 “경제진흥본부장”에서 “노동민생정책관”으로 개정하고, 임명직 위원 중 “시의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있는 바, “노동민생정책관”이 당연직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중복 규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안 제5조는 경제민주화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을 “경제정책실장”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주관부서인 공정경제담당관이 “노동민생정책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안 제9조와 안 제35조에서 “경제기획관”을 “공정경제담당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직급과 직책 체계에 맞춰 “노동민생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25조는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소관 부서가 도시교통실의 보행정책과로 변경되었으므로 “안전총괄실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는 도시농업위원회 간사를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에서 “도시농업과장”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행정기구 변동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함.

- 한편, 제정안에 조직 개편과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23조의 “공정경제과장”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안전총괄관”은 각각 “공정경제담당관”과 “서울산업진흥원”, “보행친화 기획관”으로 수정해야 함.
- 또한, 안 제17조의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준’에서 관리자란과 비고란의 기구 명칭을 각각 “안전총괄실장”, “도시교통실장”으로 반영 하고, 안 제32조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제14조제3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안 제32조는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이외에도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이 미 반영된 7개 조례를 아래의 표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구 명칭 변경 미 반영 조례 현황〉

조 번호	조 례	현행	수정안
제39조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제40조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실장
제41조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본부장	실장
제42조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제43조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제44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제45조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정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라. 종합의견

- 일반적으로 일괄 개정은 개정 대상과 취지가 동질적인 경우, 예산·제도의 개편에 따라 관련성이 깊은 정책의 일괄적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의 명칭과 사무분장 변경 등과 같은 사항은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해야 함.
- 따라서 제정안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비되지 못한 개정사항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안정성과 행정효율성,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다만, 조직개편과 명칭, 소관업무 변경 등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 등은 수정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조직개편 변경사항이 수년 동안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주의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 「없음」

가. 수정이유

- 행정기구 명칭변경과 하부조직 개정사항을 반영해 제정안의 제명을 수정하고, 소속기관의 장과 담당관 등의 명칭을 잘못 변경한 조문,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이 미 반영된 조례 등을 추가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수정의 주요 내용

- 제정안의 제명과 목적 규정을 수정함.
- 안 제32조(「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를 삭제함.
- 소속기관의 장과 담당관 등의 명칭 수정(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7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안 제31조, 안 제35조, 안 제37조, 안 제38조).
- 미 반영된 조례 등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안 제39조부터 안 제45조까지 신설).

Ⅵ.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2명, 전원 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04
----------	-----------

제안년월일 : 2019년 4월 2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행정기구 명칭변경과 하부조직 개정사항을 반영해 제정안의 제명을 수정하고, 소속기관의 장과 담당관 등의 명칭을 잘못 변경한 조문,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이 미 반영된 조례 등을 추가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가. 제정안의 제명과 목적 규정을 수정함.

나. 안 제32조(「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를 삭제함.

다. 소속기관의 장과 담당관 등의 명칭 수정(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7조, 안 제

21조, 안 제23조, 안 제31조, 안 제35조, 안 제37조,
안 제38조).

라. 미 반영된 조례 등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안 제39조부터 안 제
45조까지 신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을 “「서울특별시 행정기
구 설치조례」 개정 등”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노동민생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2. 노동민생정책관”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5조 중 ““경제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일자리기획관”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7조 중 ““경제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농업 업무 담

당과장”을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를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9조 중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한다.”를 ““노동민생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정경제과장”을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10조 중 ““경제일자리기획관”으로 한다.”를 ““경제일자리기획관”으로
하고, 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3조의2제1항 중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을
각각 “서울산업진흥원”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17조 중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한
다.”를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하고, [별
표 1] 관리자란 및 비고란 중 “안전총괄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을 각각
“안전총괄실장”, “도시교통실장”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21조 중 “제2조제1항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
다.”를 “제2조제1항 중 “안전총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안전총
괄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5조 및 제16조 중 “본부장”을 각
각 “실장”으로 한다.

안 제23조 중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를 ““도시교통실장”으로 하고, “안
전총괄관”을 “보행친화기획관”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31조 중 “같은 호 다목 중 “주택건축국장”을 “주택건축본부장”으로 한다.”를 “같은 호 다목 중 “주택건축국장”을 “주택건축본부장”으로 하며, 제16조제2항제3호 중 “본부장, 국장 또는 과장”을 “실장, 본부장,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32조를 삭제한다.

안 제35조 중 “공정경제담당관”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한다.

안 제37조 중 ““복지본부장”을 각각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를 ““복지본부장”을 각각 “복지정책실장”으로 하고, 제8조제4항제1호 중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38조 중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를 ““복지정책실장”으로 하고, 제7조 중 “청소년담당관”을 “청소년정책과장”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39조부터 안 제4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하고, 제9조제6항 중 “통계데이터담당관”을 “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8호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본부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재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재정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진흥본부장”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일자리기획관

제7조(「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진흥본부장”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농업업무 담당과장”을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의 개정) -----

-----.

---- “노동민생정책관”으로 한다.

<삭 제>

제7조(「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

-----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의 개정) -----

-----.

제13조제3항 중 “경제기획관” 을
“공정경제담당관” 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
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경제기
획관” 을 “경제일자리기획관” 으
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
정)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총괄본부장, 도시교통본부
장” 을 “안전총괄실장, 도시교
통실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

“노동민생정책관” 으로 하고, 같
은 조 제6항 중 “공정경제과장”
을 “공정경제담당관” 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
정) -----

-----.

----- “경제일자리기획관” 으
로 하고, 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3조의2제1항 중 “서울산업통
상진흥원” 을 각각 “서울산업진
흥원” 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
정) -----

-----.

호 중 “안전총괄본부장” 을 “안
전총괄실장”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교통본부장” 을
“도시교통실장” 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
기계 운영·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
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총괄본부장”
을 “안전총괄실장” 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
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
정)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
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교통본부장” 을
“도시교통실장” 으로 하고, [별
표 1] 관리자란 및 비고란 중
“안전총괄본부장”, “도시교통
본부장” 을 각각 “안전총괄실
장”, “도시교통실장” 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
기계 운영·관리조례」의 개정)

-----.

제2조제1항 중 “안전총괄본부장
(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 을
“안전총괄실장(이하 “실장” 이
라 한다)” 으로 하고, 제5조 및 제 1
6조 중 “본부장” 을 각각 “실장”
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
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
정) -----

-----.

제4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안전총괄본부장” 을 “안전총괄실장” 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본부장” 을 “복지정책실장” 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건축국장” 을 “주택건축본부장” 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본부장, 시민건강국장, 주

----- “도시교통실장” 으로 하고, “안전총괄관” 을 “보행친화기획관” 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

-----.

----- 같은 호 다목 중 “주택건축국장” 을 “주택건축본부장” 으로 하며, 제16조제2항제3호 중 “본부장, 국장 또는 과장” 을 “실장, 본부장, 국장 또는 과장” 으로 한다.

<삭 제>

택건축국장”을 “복지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주택건축본부장”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본부장, 경제기획관”을 “복지정책실장,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 및 제8조제3항 중 “복지본부장”을 각각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

제35조(「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

-, 노동민생정책관 -----.

제37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

-----.

“복지본부장”을 각각 “복지정책실장”으로 하고, 제8조제4항제1호 중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

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
지본부장” 을 “복지정책실장” 으로
한다.

<신 설>

원회 조례」의 개정) -----

-----.

----- “복지정책실장” 으로
하고, 제7조 중 “청소년담당관” 을
“청소년정책과장” 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
정)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
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보기획관” 을
“스마트도시정책관” 으로 하고, 제
9조제6항 중 “통계데이터담당관”
을 “빅데이터담당관” 으로 한다.

<신 설>

제40조(「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
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
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8호 중 “안전총괄본
부장” 을 “안전총괄실장” 으로
한다.

<신 설> 제41조(「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
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본부장” 을 “실
장” 으로 한다.

<신 설> 제42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
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관리담당
관” 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으
로 한다.

<신 설> 제43조(「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재정관리담당관” 을 각각 “재
정균형발전담당관” 으로 한다.

<신 설> 제44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신 설>

제45조(「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재정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경영기획관”을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경제진흥본부장”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경제진흥본부장”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진흥본부장”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의 도시농업·농정 업무 담당 사무관

제7조(「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진흥본부장”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진흥본부장”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일자리기획관
2. 노동민생정책관

제9조(「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제기획관”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정경제과장”을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호”를 “호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제기획관”을 “경제일자리기획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경제기획관”을 “경제일자리기획관”으로 하고, 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3조의2제1항 중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을 각각 “서울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도시교통본부”를 “도시교통실”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도시교통본부”를 “도시교통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시교통본부”를 “도시교통실”로, “담당사무관”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안전총괄본부를”을 “안전총괄실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주택건축국을”을 “주택건축본부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중 “안전총괄본부”를 각각 “안전총괄실”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

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총괄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 도시교통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하고, [별표 1] 관리자란 및 비고란 중 “안전총괄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을 각각 “안전총괄실장”, “도시교통실장”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총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안전총괄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5조 및 제 16조 중 “본부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안전총괄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 도시재생실장”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하고,
“안전총괄관”을 “보행친화기획관”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택건축국장, 복지본부장, 도시계획국장, 도시재생본부장”
을 “주택건축본부장, 복지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도시재생실장”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

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시재생본부”를 “도시재생실”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

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본부장”을 “도시재생실장”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시재생본부장”을 각각 “도시재생실장”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재생실장

5. 주택건축본부장

제30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중 “도시교통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을 “도시교통실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본부장”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건축국장”을 “주택건축본부장”으로 하며, 제16조제2항제3호 중 “본부장, 국장 또는 과장”을 “실장, 본부장,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제32조 삭제

제33조(「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본부장, 경제기획관”을 “복지정책실장, 노동민생정책관”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 및 제8조제3항 중 “복지본부장”을 각각 “복지정책실장”으로 하고, 제8조제4항제1호 중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하고,
제7조 중 “청소년담당관”을 “청소년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하고, 제9조제6항 중 “통계데이터담당관”을 “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8호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본부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재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재정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